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9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1.

발 의 자 : 이정문 · 문진석 · 김현정
한준호 · 박수현 · 한민수
이연희 · 박 정 · 김남근
이인영 · 박홍배 · 조승래
문금주 · 김원이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,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, 일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악용하여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고, 그로 인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료제출 기한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로 정하고,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한 경우에도 추가

적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
(안 제63조제2항 신설, 제75조의2 신설 등).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출하게 할”을 “제출하도록 요구 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하며, 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고, 제7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.

제63조의2제5항 중 “제63조제2항에”를 “제63조제3항에”로 한다.

제73조제1항제5호 중 “제63조제2항”을 “제63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75조제2항제25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6호 중 “제63조제2항”을 “제63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5조의2(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) ① 제63조제1항(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거짓 자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3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3조(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)	제63조(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)
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·서류 등 자료를 <u>제출하</u> <u>게</u> 할 수 있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제출하 도록 요구할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.
② ~ ③ (생 략)	③ ~ ④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
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	⑤ 제4항----- ----- ----- -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,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·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.

⑦ (생략)
제63조의2(사전 실태점검) ① ~

④ (생략)
⑤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.

⑥ (생략)
제73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4. (생략)
5. 제63조제2항(제26조제8항에

⑥ -----제3항-----

-----.

⑦ -----제3항-----

-----.

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제63조의2(사전 실태점검) ① ~

④ (현행과 같음)
⑤ -----

-----제63조제3항에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제73조(벌칙) ①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63조제3항-----

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출입·검사 시 자료의 은닉·폐기, 접근 거부 또는 위조·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
② (생략)

제75조(과태료) ①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24. (생략)

25. 제63조제1항(제26조제8항에

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관계 물품·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
26. 제63조제2항(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출입·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
27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<신설>

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5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24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26. 제63조제3항-----

27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75조의2(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) ① 제63조제1항(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

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
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개인정
보처리자가 자료를 기한까지
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
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
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
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
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
의 제출 또는 거짓 자료의 시
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기
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
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
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
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
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
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
· 징수한다.